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

이사회 귀중

2021년 02월19일

감사의견

우리는별첨된사회복지법인한국혈우재단(이하“재단”)의재무제표를감사하였습니다. 동재무제표는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현재의재무상태표, 동일로종료되는양보고기간의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및현금흐름표그리고유의적회계정책의요약을포함한재무제표의주석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우리의의견으로는별첨된재단의재무제표는재단의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현재의재무상태와동일로종료되는양보고기간의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익법인회계기준등관계법규와일반기업회계기준에따라중요성의관점에서공정하게표시하고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대한민국의회계감사기준에따라감사를수행하였습니다. 이기준에따른우리의책임은이 감사보고서의재무제표감사에대한감사인의책임단락에기술되어있습니다. 우리는재무제표감사와관련된대한민국의윤리적요구사항에따라재단으로부터독립적이며, 그러한요구사항에따른기타의윤리적책임들을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입수한감사증거가감사의견을위한근거로서충분하고적합하다고우리는믿습니다.

재무제표에대한경영진의책임

경영진은공익법인회계기준등관계법규와일반기업회계기준에따라이재무제표를작성하고공정하게표시할책임이있으며,부정이나오류로인한중요한왜곡표시가없는재무제표를작성하는데필요하다고결정한내부통제에대해서도책임이있습니다.

경영진은재무제표를작성할때, 재단의계속기업으로서의존속능력을평가하고해당되는경우, 계속기업관련사항을공시할책임이있습니다. 그리고경영진이기업을청산하거나영업을중단할의도가없는한, 회계의계속기업전제의사용에대해서도책임이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대한감사인책임

우리의목적은재단의재무제표에전체적으로부정이나오류로인한중요한왜곡표시가없는지에대하여합리적인확신을얻어우리의의견이포함된감사보고서를발행하는데있습니다. 합리적인확신은높은수준의확신을의미하나, 감사기준에따라수행된감사가항상중요한왜곡표시를발견한다는것을보장하지는않습니다. 왜곡표시는부정이나오류로부터발생할수있으며, 왜곡표시가재무제표를근거로하는이용자의경제적의사결정에개별적으로또는집합적으로영향을미칠것이합리적으로예상되면, 그왜곡표시는중요하다고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따른감사의일부로서우리는감사의전과정에걸쳐전문가적판단을수행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유지하고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오류로인한재무제표의중요왜곡표시위험을식별하고평가하며그러한위험에대응하는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합니다. 그리고감사의견의근거로서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합니다. 부정은공모, 위조, 의도적인누락, 허위진술또는내부통제무력화가개입될수있기때문에부정으로인한중요한왜곡표시를발견하지못할위험은오류로인한위험보다큽니다.
- 상황에적합한감사절차를설계하기위하여감사와관련된내부통제를이해합니다. 그러나이는내부통제의효과성에대한의견을표명하기위한것이아닙니다.
- 재무제표를작성하기위하여경영진이적용한회계정책의적합성과경영진이드출한회계추정치와관련공시의합리성에대하여평가합니다.
- 경영진이사용한회계의계속기업전제의적절성과, 입수한감사증거를근거로계속기업으로서의존속능력에대하여유의적의문을초래할수있는사건이나, 상황과관련된중요한불확실성이존재하는지여부에대하여결론을내립니다. 중요한불확실성이존재한다고결론을내리는경우, 우리는재무제표의관련공시에대하여감사보고서에주의를환기시키고, 이들공시가부적절한경우의견을변형시킬것을요구받고있습니다. 우리의결론은감사보고서일까지입수된감사증거에기초하나, 미래의사건이나상황이재단의계속기업으로서존속을중단시킬수있습니다.
- 공시를포함한재무제표의전반적인표시와구조및내용을평가하고, 재무제표의기초가되는거래와사건을재무제표가공정한방식으로표시하고있는지여부를평가합니다.

우리는여러가지사항들중에서계획된감사범위와시기그리고감사중식별된유의적내부통제미비점등유의적인감사의발견사항에대하여지배기구와커뮤니케이션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3길 11 광성빌딩신관8층

정진회계법인



대표이사 황중곤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재단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